

- 난곡선 경전철의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 -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청 원 자 :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50, 104-1003(시흥동, 관악우방 아파트) 강제선 외 4,978명
- 소개의원 : 강구덕 의원(새누리당, 금천구 제2선거구, 교육위원회)
- 접수일자 : 2016. 6. 28.
- 회부일자 : 2016. 6. 29.

2. 청원요지

-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는 서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건설된 대단지 아파트로, 주민들이 국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약 40여분이 소요되어 매우 불편한 실정이므로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함께 고질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보라매공원에서 난향동 지역까지 연결되는 난곡선 경전철을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

3. 소개의원 요지

-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는 서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건설된 대단지 아파트로, 아파트 주민들이 국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약 40여분이 소요되고 있음
- 또한 이 지역은 서울 서남권지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일 뿐만 아니라 삼성산 자락의 높은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, 좌우가 산으로 둘러싸여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지역임
- 따라서, 보라매공원에서 난향동지역까지 연결되는 난곡선 경전철을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함께 그 동안 해당지역들이 감내해 온 교통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
- 이에 본 의원은 난곡선을 벽산아파트까지 연장 요청하는 동 청원이 매우 시급하고,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을 소개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) :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계획의 타당성 조사시 벽산아파트까지 연장하는 노선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청원의 개요

- 동 청원은 보라매공원에서 난향동까지 건설계획인 난곡선 경전철의 종점을 관악구 난향동에서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

나. 난곡선 경전철 건설 추진 현황

- 난곡선 경전철은 보라매공원부터 난향동까지 구간에 총 사업비 3,887억원, 총연장 4.1km, 정거장 5개소, 차량기지 1개소의 규모로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15년 6월 30일 ‘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및 확정·고시되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

난곡선 경전철은 2015년 7월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, 향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

다. 검토의견

- 동 청원의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주변에는 시내버스 152번, 마을버스 금천01번, 금천11-1번 등 3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나,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는 금천01번 1개 노선 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고, 시흥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금천01번, 금천11-1번 2개 노선만이 운행되고 있으며, 특히 금천11-1번 노선은 배차간격이

25분에 이르고 있어 도심방향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음

- 동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‘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’¹⁾을 수립하면서 난향초등학교에서 벽산아파트를 거쳐 금천구청까지 연결하는 난곡선 연장 사업²⁾에 검토하였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
- 다만, 동 청원의 노선 변경 요청은 서울시가 기존 검토했던 노선과 일치하지 않은 점, 현재까지 난곡선 경전철의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및 시기적으로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³⁾ 용역 착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

난곡선 경전철의 종점을 기존 관악구 난향동에서 신규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함으로써 최종 난곡선 노선이 보라매공원에서 난향초교를 거쳐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로 되는 것으로 노선 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 검토가 가능하다 할 것임

- 한편, 서울시장은 동 청원에 대해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철도망계획의 타당성 조사시 벽산아파트까지 연장하는 노선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견⁴⁾을 제출하였음

1) 서울특별시, 2013.6월

2) 총연장 4.4km, 총 정거장 5개소(환승 2개소), 총 사업비 4,229억원, B/C 0.78

3) 「도시철도법」 제5조(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·운영하려면 관계 시·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(이하 “도시철도망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⑥ 시·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

4)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원회부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, 교통정책과-14179(2016.7.8.)